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성오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462
----------	------

발의년월일 : 2022. 09. 30.

발의의원 : 이성오, 권기훈,  
김태유, 박종필,  
전경원, 정일균,  
조경규, 황순자  
의원(8명)

## 1. 제안이유

행정투명성 제고를 위해 대구광역시 산하 출자·출연기관의 기록물 보관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출자·출연기관장의 기록물 관리의무를 규정(안 제17조)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관계부서 합의완료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원

제17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자기관은 제외한다.

(붙임1)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  적 평가 및 법 제30조에 따른 경영  진단의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 또는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p> <p>1. 2. (생   략)</p> <p>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3에 따라  <u>설립된 경영지도법인</u></p> <p>4. (생   략)</p> <p>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u>제17조</u> (생   략)</p>	<p>제14조(경영실적 평가 등의 위탁) ①  -----  -----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제1항  에 따라 <u>설립된 지방공기업평가  원</u></p> <p>4. (현행과 같음)</p> <p>② (현행과 같음)</p> <p><u>제17조(기록물 관리 등) 출자·출연  기관의 장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기관의  기록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의 지분이 100분의 50 미만인 출  자기관은 제외한다.</u></p> <p><u>제18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p>

(붙임2)

## 관 계 법 령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접수한 기록물과 개인 또는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공공기관이 소유·관리하는 기록정보 자료를 포함한다) 중 국가적으로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정보 자료 등 공공기록물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기관”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行政博物)을 말한다.
3. “기록물관리”란 기록물의 생산·분류·정리·이관(移管)·수집·평가·폐기·보존·공개·활용 및 이에 부수되는 모든 업무를 말한다.
4. “기록물관리기관”이란 일정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하며, 영구기록물관리기관, 기록관 및 특수기록관으로 구분한다.
5.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이란 기록물의 영구보존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와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전문인력을 갖추고 기록물을 영구적으로 관리하는 기관을 말하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관으로 구분한다.

###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공공기관의 범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출연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4.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한 법인(다만,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한 문화원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협회를 제외한다)
5.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각급 학교